
제56회 정기총회자료

2018. 2. 26.

K-BIZ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회 순

1. 성 원 보 고
2. 개 회
3. 국 민 의 례
4. 시 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 ③ 조달청장 표창
 - ④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 ⑤ 이사장 표창
5. 개 회 사
6. 내 빈 소 개
7. 내 빈 축 사

○○○○○○○ 격려사

○○○○○○○ 격려사
8. 정 회
9. 감 사 보 고
10. 안 건 심 의

제1호 의안 : 2017년도 사업보고 ·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제2호 의안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제4호 의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제5호 의안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
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제6호 의안 : 부동산 매각 및 매입[안]
[① 조합회관 매각 및 매입 ② 토지 매각]

제7호 의안 : 이사회 위임[안]
11. 폐 회

목 차

- 제1호 의안 2017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 1
- 제2호 의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3
-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 5
- 제4호 의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 8
- 제5호 의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
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 11
- 제6호 의안 부동산 매각 및 매입(안)
① 조합 회관 매각 및 매입 ② 토지매각 / 14
- 제7호 의안 이사회 위임(안) / 20

의 안 번 호	제 1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2017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2017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1. 의결주문

별첨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며, 2017년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56조 및 예산회계규약 제16조에 의거 작성된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보고

『2017년도 사업보고서』별첨

나.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2017년도 결산서안』별첨

의 안 번 호	제 2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1. 의결주문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23조 및 예산회계규약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편성한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2018년도 사업계획서』별첨

나. 수지예산

『2018년도 수지예산(안)』별첨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3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정관 개정(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정관 개정(안)

1. 의결주문

정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사유

다수의 조합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을 명문화하여 조합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의 영역범위를 넓히고자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업종 추가

현행	개정(안)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 정관 개정(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붙임】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 제8조 (생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동일)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동일)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 582, 620)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 제74조 (생략)	제10조 ~ 제74조 (현행과 동일)
부칙	부칙
1. ~ 18 (생략) <u><신설></u>	1. ~ 18 (현행과 동일) <u>19.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이 인가한 날(0000.00.00)부터 시행한다.</u>

의 안 번 호	제 4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1. 의결주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 추천횟수 및 계약
금액 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소액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협동조합을
통하여 적정업체를 추천받고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따라서 동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물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도 횟수와
실제 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 하는 기준(안)을 마련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함

- 구매대상액 : 추정가격 5천만 원(부가세별도)이하 구매 건
-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구매대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추천대상업체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3. 의결내용 : 붙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 추천 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참조

[붙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 추천 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물품별 업체당 연간 추천횟수 및 실계약 한도액)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2018년도 제품별 추천한도(안)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추천 횟수(회)	계약금액(원)
전자·정보 통신	다 중 화 장 치	43221810	광 다 중 화 장 치	4322181001	광 다 중 화 장 치	6	200,000,000
		43222695	다 중 통 신 장 치	4322269501	다 중 통 신 장 비	6	200,000,000
		43222822	시 분 할 다 중 화 장 치	4322282201	시 분 할 다 중 화 장 치	6	200,000,000
	데 이 터 포 트 장 치	43222611	네 트 워 크 채 널 포 트 데 이 터 서 비 스 유 닷	4322261103	데 이 터 포 트 장 치	6	200,000,000
			디 지 털 서 비 스 유 닷	4322261102	디 지 털 서 비 스 유 닷	6	200,000,000
			채 널 서 비 스 유 닷	4322261101	채 널 서 비 스 유 닷	6	200,000,000
	전 화 교 환 기 네 트 워 크 연 결 장 치	43222696	동 보 장 치	4322269601	동 보 장 치	6	200,000,000
		43221501	자 동 안 내 장 치	4322150101	자 동 안 내 장 치	6	200,000,000
		43222818	배 선 반	4322281801	구 내 단 자 함	6	200,000,000
				4322281802	국 선 단 자 함	6	200,000,000
				4322281803	본 배 선 반	6	200,000,000
				4322281804	중 간 배 선 반	6	200,000,000
				4322281805	통 합 배 선 반	6	200,000,000

의 안 번 호	제 5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1. 의결주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물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추천횟수 및 연간 계약한도기준(안)을 마련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함

※ 법적근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4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 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구매대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추천대상업체 :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3. 의결내용 : 붙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위한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기준(안)』 참조

[붙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기준(안)

(※물품별 업체당 연간 추천횟수)

산업군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2018년도 제품별 추천한도(안)	
		세	품명	세부	세부분명	연간 추천 횟수(회)	연간 계약한도(억원)
전자정보 통신	전화 교환기 네트워크 연결장치	43222696	동보장치	4322269601	동 보 장 치	24	28
		43222818	배 선 반	4322281805	통 합배선반	24	15

의 안 번 호	제 6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부동산 매각 및 매입(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1) 조합 회관 매각 및 매입(안)

1. 의결주문

조합사옥 매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합사옥의 매입 당시 사유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공동사업실적 악화에 의한 수입 감소로 조합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사무실을 축소 운영하고 제반 경비 절약방안의 하나로 사무실 겸용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수입 등을 통해 조합 수지를 개선하고자 현 사옥을 매입하였으나, 이후 각종 회의 개최 시 사무실 내부 협소로 조합원사에 대한 업무 서비스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올해로 건물 준공 년도가 15년째 된다는 점과 매입 당시 금액보다 현재 실거래가의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는 현 시점에서 장·단기적으로 매각을 진행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 개선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물 매입을 추진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조합원사에 대한 교육 및 각종 회의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관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함.

3. 자료(별첨) : 조합 회관 보유현황

조합회관 개요

구 분	내 역		
위 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34(성산동)		
규 모	대 지 85.6평(283㎡) 연건평 307평 (1015.46㎡) 지하1층 지상5층		
주차시설	10대		
교통여건	망원역 도보 8분, 왕복 4차선 도로변		
준공년도	2003. 10월 완공		
임대현황			
	층별	용도	평수
	지층	음악연습실	55평
	1층	커피전문점	34평
	2층	학원	41평
	2층	사무실	10평
	3층	사무실	51평
	4층	음악연습실	51평

조합회관 현황 및 취득가액

(단위:원)

구분	규모	취득가액	감가상각충당금	장 부 상 잔존가액	비 고
토지	283m ² (85.6평)	1,131,702,734		1,383,226,346	
건물	1015.46m ² (307평)	768,297,266	111,101,627	734,248,367	
계		1,900,000,000	111,101,627	2,117,474,713	

(2) 토지 매각(안)

1. 의결주문

조합 토지 매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1969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토지는 현재까지 일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상으로는 사도(私道)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유 토지 주변으로는 향후 어떠한 개발이 없을 것이라는 관할 구청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유 토지 주변으로 소규모 단독주택 개량사업 진행으로 소유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건축업자들의 제안이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과 금지’는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제3호(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취득과 처분이 가능함으로 회계장부상 기재하고 있고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이지만 장·단기적으로 주변 주택개량사업으로 필요가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3. 자료(별첨) : 토지 보유현황

조합 토지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22-7 (도로) (私道路)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222-8 (대지)
규 모	150m ² (45.4평) 도로 (私道路) 56m ² (16.9평) 대지
구입년도	1969. 11월

토지 현황 및 취득가액

(단위:원)

구분	규 모	취득가액(A)	감가상각충당금	장 부 상 잔존가액	비 고
토지	150m ² (45.4평) (도로)				
	56m ² (16.9평) (대지)	1,190,000		1,190,000	
계		1,190,000	0	1,190,000	

의
결
사
항

의 안 번 호	제 7 호
의 결 년 월 일	2018. 2. 26

이사회 위임(안)

제 56 회 정 기 총 회

제 안 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 사 장 주 대 철
제안년월일	2018. 2. 26

이사회 위임(안)

1. 의결주문

총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 가능한 아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권한을 위임 하고자 함.

3. 의결내용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의결사항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함.

-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제3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제5호)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제10호)
-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